

의안번호	제 318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 278 회)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강태원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3월 6일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8
----------	-----

발의연월일 : 2009년 3월 6일
발 의 자 : 강태원 · 연만흠 · 김환동
이필용 · 장주식 · 조영재
박재국의원(7인)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리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조례의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의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리.

- 1)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 지방자치법 제16조(안 제1조)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안 제1조 및 제2조)
- 3)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 지방자치법 제15조(안 제6조)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 정비.

- 1) 위원 자격요건 및 위원장 선출 방법 삭제(현행 조례 제3조)

2) 위원회 기능 삭제(현행 조례 제6조)

3) 회의 통지 및 의결 방법 삭제(현행 조례 제8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

1) 항 표시(①, ② --)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띄어쓰기로 함.

2) “제○조의 규정에 의한/의하여”를 “제○조의 규정에 따른/따라”로 함.

3) 그 밖에 일본식 표현(~에 관하여 등), 어려운 용어(통할→총괄 등)의 정비 등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나. 관련부서 협의 : 의견없음(감사관실)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마. 기타사항 : 이 의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 「신규 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음.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는 자치업무담당국장, 환경업무담당국장, 건설업무담당국장, 감사관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2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 부의)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4. 도의원이 위원인 경우 소속한 지역선거구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감사청구 주민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②(삭제 2002.5.3)	제 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 주민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제 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제 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6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다. ② 영 제26제3항제1호에서 “도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장급이상 공무원, 감사관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감사와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며, 간사와 사무직원은 감사담당부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 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충청북도 의회의원 및 소속

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는 자치업무담당국장 환경업무담당국장, 건설업무담당국장, 감사관으로 한다.

(삭제)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 4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2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 중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 임기
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 본인이 원하거
나, 질병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
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다.

제 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1.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결정
(감사청구의 수리 및 각하)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청구인의 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제)

제 7조(심의회 부의) 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 1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 8조(회의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위원장을 포함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자에 관한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제 6조(심의회 부의)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 7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삭제)

(삭제)

② 위원은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
와 관련된 사항

4. (신설)

4. 도의회가 위원인 경우 소속
한 지역선거구에 관한 사항

⑤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심의
회의 의결로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삭제)

제 9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 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
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
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회
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2000년 3월 2일부터 적용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4. (생략)
- ② ~ ⑨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